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제3항)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1.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 제8조의2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교육”을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u>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u>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교육</u>----- -----.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2)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 인력수요 절감을 위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음.

【 논농업 기계화율 현황 】

연 도	평균	경운·정지	이 양	방 제	수 확	건 조
2016	97.9	100	99.9	97.1	100	92.6
2018	98.4	100	100	98.1	100	93.9
2020	98.6	100	100	98.0	100	95.0
2022	99.3	100	100	99.4	100	97.1
2024	99.7	100	100	99.8	100	98.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5. 1. 21.) 제출

또한,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7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작농¹⁾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지규모별농가(2022년~2023년) 】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경지없는 농 가	경 지 있 는 농 가						
			소 계	05ha 미만	0.5 ~ 1.0	1.0 ~ 2.0	2.0 ~ 3.0	3.0 ~ 5.0	5.0ha 이상
2022	1,023 (100.0)	7 (0.7)	1,016 (99.3)	534 (52.2)	218 (21.3)	144 (14.1)	47 (4.6)	39 (3.8)	35 (3.4)
2023	999 (100.0)	6 (0.6)	993 (99.4)	522 (52.2)	213 (21.3)	138 (13.8)	46 (4.6)	39 (3.9)	35 (3.5)
증 감	-23.8	-0.7	-23.1	-11.9	-5.0	-5.7	-0.6	-0.2	0.3
증감률	-2.3	-9.3	-2.3	-2.2	-2.3	-4.0	-1.4	-0.4	0.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5. 1. 21.) 제출

1) 경지규모 1.0ha(1,000㎡, 약 300평) 미만

【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요 】

- **(목적)**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03년부터 추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 농기계임대	24,800	32,740	27,102
■ 농기계임대사업소	6,750	6,750	5,850
■ 주산지일관기계화	12,150	15,450	15,450
■ 노후농기계 대체	4,500	8,740	5,652
■ 임대사업 평가 및 조사	1,400	1,400	150
■ 국제농기계박람회	(격년개최)	400	(격년개최)

-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 (신규·분점·이전·증설 등 설치지원)
- ②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주산지에 경운·정지, 파종·정식,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
- ③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
- ④ **(임대사업 평가 및 조사)** 지자체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및 조사
- ⑤ **(국제농기계박람회)** 국내외 농기계·자재 전시 및 정보제공을 통한 농기자재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실적]

* 2023년 기준 전국 147개 시·군 455개 임대사업소 운영

구분	2022년	2023년
임대농기계 수(대)	93,765	96,858
이용자 수(명)	825,570	847,401
임대일 수(일)	1,059,319	1,077,83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5. 1. 21.) 제출

이와 같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가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동법 제20조를 근거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관련 조문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4. “ <u>교육훈련사업</u> ”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u>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u>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u>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농기계 전문 교육 】

- ☐ (목적) 시·군 농기계 담당자 대상 농기계 정비, 운전, 안전교육 추진
- ☐ (교육기관/대상)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기계 담당자
- ☐ (교육내용) 농기계 경정비, 기계화 농작업, 드론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 32개 과정

【 최근 5년 농업기계 전문 교육 실시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인원	680	839	781	986	1,030

개정안은 상기 ‘농업기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에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상으로도 이미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